

- 청소년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체육청소년과]

제안설명서

설명자: 체육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운영 중인 달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 12. 31. 字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소년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은 조암로 129(대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541.81㎡ 규모로 2022. 11. 26일 개소하였습니다.
 - 현재 수탁기관은 구미대학교로 위탁기간은 2022. 6. 1.~2024. 12. 31.까지 2년 7개월입니다.
 - 2024년 위탁운영비는 410백만원이며, 운영인력은 관장 1명, 팀장 2명, 팀원 5명으로 총 8명입니다.
 - 주요사업은 청소년 활동 사업, 문화 강좌 사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등입니다.

향후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4. 10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11월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운영주체 선정방법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서 등을 접수하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4. 9.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체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운영 중인 달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운영 및 시설 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운영 및 위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 필요성
 - 청소년시설 운영은 청소년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 관리
- 청소년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 전반
- 기타 달서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현황

- 시설 명: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 위치: 조암로 129(대천동)
- 개소일자: 2022. 11. 26.(수용인원: 190명)
- 시설규모: 부지 1,899.2㎡, 연면적 1,541.81㎡(지상3~5층)
- 층별 시설내역

구 분	면 적(㎡)	용 도	비 고
계	1,541.81		
지상 3층	621.84	대강당,사무실,청소년자치활동실,카페테리아, 문서고, 창고, 통신실	※ 카페테리아 (66.3㎡) 위탁 제외
지상 4층	466.83	댄스연습실,음악연습실,영상제작실,다목적실, 휴게홀	
지상 5층	453.14	강의실-1,강의실-2,동아리방-1,동아리방-2, 방과후아카데미강의실-1, 방과후아카데미강의실-2, 방과후아카데미사무실	

○ 주요기능

-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 청소년의 정서함양 교육
-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등 수련거리 발굴육성
-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 운영시간: 화~금 09:00~21:00, 토·일요일 09:00~18:00

○ 운영인력

총 원	청소년사업팀				방과후아카데미팀		
	소 계	관 장	팀 장	팀 원	소 계	팀장	팀원
8명	5	1	1	3	3	1	2

○ 2023년도 위탁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 행 내 역			비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58,000	358,000	234,557	103,443	20,000	

○ 이용현황

(2023.12.31.기준)

계	유아 및 아동	청소년	성 인	비고
81,342 (100%)	2,243 (3%)	58,205 (71%)	20,894 (26%)	1일 평균 232명

※ 위탁기관 평가

시설명	평가근거	평가내용	평가기관	평가결과	비 고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시설운영 및 관리 청소년이용 및 참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기준 및 안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3년-평가제외 (1년미만운영)	종합평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리더십과 책임경영 인사 및 조직관리 재무 및 예산관리 사업성과 시설관리 사업활성화 노력	달서구	24년-8월실시	성과평가

-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는 시설별 법령에 따라 2년, 3년주기로 여성가족부 등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어 실시하지 않음. 다만, 문화의집 경우에는 종합평가 주기가 위탁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실시(2024. 8월)

■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구 분	계	리더십과 책임경영	인사 및 조직관리	재무 및 예산관리	사업성과	시설관리	사업활성화 노력
배점	100	10	20	20	25	10	15
평가점수	96.5	9.4	19.1	19.3	24.3	10	14.4

마. 위탁기간: 2025. 1. 1.~2029. 12. 31.(5년)

바. 위탁예산: 410백만원 정도(2024년 기준)

사.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청소년분야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 민간이 가진 청소년 육성, 보호, 복지에 대한 전문성 활용, 인력구성의 유연함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
- 관련 법령에 근거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 지역내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 가능
- 정기적인 시설 평가, 지도 감독을 통한 운영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참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2 참조

다.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계획: 붙임3 참조

라. 향후 추진일정

-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2024. 10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2024. 11월
- 선정결과 공고: 2024. 11월
- 위탁계약 체결 등: 2024. 11월

붙임 1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 및 위탁)

-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전문가 자문 검토내용

- 대구과학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 박호문 교수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이수연 교수
-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조명실 교수(아동학)

검토기준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 청소년단체 및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위탁을 통해 수련시설의 공통된 기준과 적용으로 통일성과 형평성 확보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규정으로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게 확보됨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에 따른 정원의 증원 및 재정 부담 완화 ◦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단체 선정 및 역량 있는 청소년 전문인력의 효율적 구성과 조직의 유연성 극대화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로 전문성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 ◦ 청소년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경쟁력 있는 청소년단체 선정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위탁수행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7조(감독)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의 집은 대부분 지역사회 차원의 공익적 사업과 청소년 문화예술중점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하고 있으며, ◦ 민간의 지역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 가능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계획

2024. 12. 31일자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투명한 절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I 관련규정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운영 및 위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II 추진방향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운영으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결정

III 위탁개요

- 시설현황
 - 시설 명: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 위치: 달서구 조암로 129(대천동)
 - 규모: 부지면적 1,899.2㎡, 연면적 1,541.81㎡(지상3~5층)
 - ※ 달서선사관·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
{주차장(지하 1층),달서선사관(1~2층),청소년문화의집(3~5층)}

○ 수용정원: 190명

○ 층별 시설내역: 대강당, 강의실, 동아리실, 댄스·음악연습실 등

구 분	면 적(m ²)	용 도	비고
계	1,541.81		
지상 3층	621.84	대강당,사무실,청소년자치활동실,카페테리아, 문서고, 창고, 통신실	※ 카페테리아 (66.3m ²) 위탁 제외
지상 4층	466.83	댄스연습실,음악연습실,영상제작실,다목적실, 휴게홀	
지상 5층	453.14	강의실-1,강의실-2,동아리방-1,동아리방-2, 방과후아카데미강의실-1, 방과후아카데미강의실-2, 방과후아카데미사무실	

위탁기간: 2025. 1. 1.~2029. 12. 31.(5년)

위탁예산: 410백만원정도(2024년 기준)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

신청자격 요건

○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단체(대표자 및 시설장 내정자)
- 최근 5년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
- 최근 3년간 「아동 및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행정처분(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단체
- 법인 및 산하시설이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준용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호[2005.04.08.(금), 관보 제15963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위탁조건

- 수탁자는 관련 법령,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단, 실비이용료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되 청소년문화의집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자체비용에 충당하여야 함
- 위탁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 시 별도의 손실보전금 없음
- 조례로 정한 이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할 수 없으며, 조례로 정한 이용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시설장은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여야 함
-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적격성, 재정능력,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자의 전문성 등 종합적 평가
- ※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요구 및 기부금 여부는 심사기준에서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IV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추진기간	추진내용	비 고
2024. 10. 1.~10. 18.	모집 공고	1개 단체 이하 신청 시 재공고
10. 21.~10. 23.	신청서 접수	
10. 24.~11. 1.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9인 이내
11. 4.~11. 8.	심사 준비 및 자료 검토	
11. 12.(예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11월중	위탁계약 체결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4. 10. 1.~10. 18.(17일간)

※ 응모단체가 없거나 1개 단체가 응모할 경우 재공고(5일 이상)

○ 공고내용: 공고문 <붙임2>

- 신청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

○ 접수기간: 2024. 10. 21.~10. 23.(3일간)

○ 접수장소: 달서구청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우편접수 불가)

○ 신청시 제출서류: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3>

① 사업계획서 (서식 1)

② 서약서, 위임장 (서식 2),(서식 3)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대표자 및 시설장) 각 1부(서식 4)

④ 단체의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 허가증 사본,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⑤ 단체의 조직 및 대표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단체의 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단체의 청소년시설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⑧ 단체의 청소년관련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⑨ 단체의 외부(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모사업 실적, 수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⑩ 단체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⑪ 시설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⑫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1부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 별도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 9인 이내로 구성(청소년전문가를 과반수이상 포함)
 -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 신청접수 마감 후 위탁운영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장은 별도 수여하지 않고 선정심사 후 자동해산

○ 심사위원회

- 심사일시: 2024. 11. 12.(화) (예정)
- 심사장소: 5층 상황실 (예정)
- 위탁심사표 <붙임4>

○ 결정방법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체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이하인 경우: 재공고
- 재공고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 평균득점 75점 이상 시 결정
 - 평균득점 75점 미만 시 재공모

○ 심사결과 공개

- 결과공개: 2024. 11월중
- 공개방법
 - 구·시설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여성가족부, 전국 지자체 통보

위탁계약 체결

- 일 시: 2024. 11월중 ※ 별도계획 수립
- 계약기간: 2025. 1. 1.~2029. 12. 31.(5년)
- 계약내용
 - 필수사항: 위탁대상, 계약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사업내용,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계약의 해지 등
 - 기타사항: 수탁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계약서 2부 작성 후 양자간 서명·날인